



문서번호 사법-2009-1109

수 신 이귀남 법무부장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제 목 '김준규 검찰총장 행위 징계사유 해당사항 없음' 결정 근거 질의

날 짜 2009. 12. 8. (총 2 쪽)

‘김준규 검찰총장 행위 징계사유 해당사항 없음’ 결정 근거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기자금품제공사건에 대해 검찰 및 감사의 품위를 훼손한 사건으로 징계조치를 진행해줄 것을 귀 장관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다수의 법사위원들께서 김 총장의 행동을 질타하고 징계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징계심의를 청구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3. 그런데 참여연대의 기대와 달리 장관께서는 김 총장의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3일 참여연대에 이같은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이는 김 총장의 행동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대상이 된다고 하는 감사징계법 2조 3항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참여연대는 이같은 회신내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이같이 결정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의 상식에 반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사위원들의 강력한 요청마저 가볍게 외면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뿐 아니라, 국민의 상당수는 김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수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장관께서는 김 총장의 행위를 우연한 실수로 치부해버리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김 총장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국의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방치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높은 공직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고, 고위직에 대한 엄정한 윤리기준 적용이 공직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임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같이 국민의 상식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림에 있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청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